

# 교당 중심의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원주 사업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1. 서 론
2. 원불교 사회복지의 방향
3. 노인 주간보호사업의 정의, 현황 및 설치기준
4. 교당에서의 주간보호사업의 실현 가능성 모색
5. 교당의 노인주간보호프로그램의 예측 효과
6. 결 론

## 1. 서 론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화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산업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령화라고도 하는데, 한 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전체인구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에 2.9%, 1970년에 3.1%였던 것이 1995년에 5.9%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져서 2020년에는 13.2%, 2030년에는 1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sup>52)</sup>, 또한 평균수명은 1996년에 72.9세, 2020년에는 77.0세에 이를 전망이다.<sup>53)</sup>

5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7.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은 주로 인구의 고령화, 산업화, 핵가족화, 부양의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뜻이 사회로 이양되는 것이다.

핵가족화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역으로 노인의 부양문제가 가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이 잘 유지되려면 노인 부양을 가족에게만 전 담시키지 않고 사회가 사회안전망 속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가족이 잘 유지되어야 사회의 부양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가 노인부양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이나 비용 절감 면에서 효율적이다. 여기에 다른 사회적 역할이 추가된다면, 가족의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가족의 유지를 원활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바로 종교가 담당해줄 수 있다.

또한 교단적으로 보면 우리 교단은 대체로 교도의 고령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교도 가족의 노인의 보살핌 문제가 그 가족의 고민이 될 것이므로 원불교에서 노인의 보살핌 문제를 도와준다면 교도 가족이 한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며, 노인만 원불교 교도이고 가족들은 비교도라면 그 가족들을 원불교 품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교도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까지 보살펴 준다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원불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되며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각 교당에서는 교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을 접근대상으로 삼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향을 노인에게로 돌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산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아동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sup>54)</sup>, 반대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을 가진 부모의 보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권장한 결과, 지금 전국에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이 약 17,605개소(1998년 12월말 현재)나

53) 보건복지부, 『1996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6년, p. 7.

54) 18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18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197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6.3%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전체 인구의 28.5%였으며, 2010년에는 23.1%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1996년도 아동복지사업지침』, p. 5 참조).

설립되어 있다. 그런데 벌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난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동수가 더욱 줄어들게 되므로 운영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교단도 어린이집이 124개소, 유치원이 37개소나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보다도 노인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에 관련된 시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좋다고 생각되며, 여건이 더 허락한다면 가정봉사원파견 사업까지 겸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시설을 설립할 여건이 안되면 우선 사설로 교당이 주관하는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노인을 보살펴 드리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원불교 사회복지의 방향

광복 이후 전재동포 구호사업으로부터 비롯된 원불교 사회복지활동은 다양하게 펼쳐져 왔으며,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교세에 비해서 매우 활발한 사업을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말 현재 교단의 사회복지법인은 삼동회, 유린보은동산, 창필재단 등 3개이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총48개소(미주 필라 포함)이다. 이중 복지관이 16개소이며, 수용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이 10개소, 교육보도시설이 4개소이며, 나머지 17개 시설은 출가교역자를 위한 수도요양시설이다.

이 중 출가교역자를 위한 수도요양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은 대부분 정부 위탁시설이다.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운영관리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사회병리문제로 불거지는 세태에서 원불교 정신에 바탕해서 양심적으로 헌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지활동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돈으로만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돈도 복지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위탁시설만 수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몇 개 시설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돋고 보살피는 일을 교당이 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당의 사회복지시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의 기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 교당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했던 것에는 아동을 잘 키우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를 통해 교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교당경제와 교당 공간확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경제적 도움이 어린이집 보다 적을 것이다. 또 기대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린이집도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므로 오히려 비용면에서 교당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활동은 교당이 관심 가져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종교가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돋는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활동이기 때문이다.

요즘에 와서는 교화도 주는 교화, 베푸는 교화를 하자고 얘기되고 있는데 주는 교화가 바로 사회복지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고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순수하게 복지를 실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히 교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화와 복지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복지의 실천이 곧 교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투여되는 비용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3. 노인 주간보호사업의 정의, 현황 및 설치기준

#### 1) 주간보호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인데,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

도록 하고자 하는”<sup>55)</sup>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에는 주간보호사업 외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있다.

주간보호사업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한다.<sup>56)</sup>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주간보호사업의 목표는 1)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도모, 3)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수발부담 경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57)</sup>

주간보호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만성퇴행성 질병·출장 등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장기수용시설이 아닌 가정과 중간형태인 일시 보호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에 의해서이다.<sup>58)</sup>

## 2) 주간보호사업의 현황 및 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998년 현재 전국에 총 98개소가 있으며, 그 중 주간보호시설은 총 31개소가 있고,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에 8개소, 부산에 6개소, 경기에 4개소, 전북에 2개소가 있고 그 외는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전북에 설치된 2개소는 전주 천주교인보회가 운영하는 시설과 익산성모병원(천주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표 1> 노인주간보호시설 현황

전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1	8	6	1	1	1	1	4	1	1	1	2	1	1	1	1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1998; 정경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8년 10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에서 발췌.

5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8년도, p. 67.

56) 「노인복지법」 제38조 제2항.

57) 전계서, pp. 78-80.

58) 상동.

주간보호사업의 사업기관은 무료사업기관, 실비사업기관, 유료사업기관으로 세 구분되며, 무료와 실비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설치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며, 유료사업의 설치주체는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다.<sup>59)</sup>

주간보호사업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며,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한다.<sup>60)</sup>

주간보호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무료이용·실비이용·유료이용의 3가지 이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무료이용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실비이용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균 소득 215만원 미만인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유료이용은 무료·실비이용 대상노인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이다.<sup>61)</sup>

주간보호사업의 비용수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업기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 이하의 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업을 실시하되,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수납할 수 있다. 유료이용시설인 경우는 기본서비스<sup>62)</sup>는 1일 기준 4,000원, 특별서비스<sup>63)</sup>는 1회당 1,500원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다. 치매나 중풍 노인의 경우는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수납이 가능하다. 비용을 수납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수납신고 후 비용수납이 가능하다.<sup>64)</sup>이상과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선정기준 및 본인 부담금

구 분	선정기준	본인부담금	정부부담
무료이용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중앙·지방 정부
실비이용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균 소득 215만원 미만인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식비 등 최소 실비	
유료이용	무료·실비이용 대상노인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	기본 : 1일 기준 4,000원 특별 : 1회당 1,500원 추가	없음

자료 : 『노인복지사업지침』 1998년도, p. 67-68.

59) 전계서, p. 67.

60)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61) 상계서, pp. 67-68.

62) 기본서비스 비용에는 중식제공, 간식제공, 물리치료, 프로그램 준비 및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다.

63) 특별서비스 비용에는 목욕·용변서비스 비용이 포함된다.

64)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항.

주간보호사업의 사업내용은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3)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4) 장애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다.

주간보호사업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낮동안 보호)이며<sup>65)</sup>, 이용방법은 사업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며, 이용절차는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신원,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sup>66)</sup>

### 3)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규모는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사회복지시설 병설시 완화적용)이며,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m<sup>2</sup>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설비시설은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 등이다.

직원의 배치기준은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에는 시설장,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취사부,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를 두게 되며, 이용정원 10인 이상인 경우는 여기에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을 더 두게 된다(<표 3> 참조).<sup>67)</sup>

<표 3>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주 : 생활보조원은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자료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9].

65) 대체적으로 주 5일, 1일 평균 6시간(10:00~16:00) 보호를 한다.

66) 전계서, pp. 78-80.

6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9].

주간보호시설의 운영기준<sup>68)</sup>에는 운영규정, 회계, 장부 등의 비치, 사업의 실시, 운영간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운영규정에 관해서 시설의 장은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장·이용노인대표·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간보호사업의 실시는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3)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4)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69)</sup>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sup>70)</sup>

#### 4. 교당에서의 주간보호사업의 실현 가능성 모색

##### 1) 법적 규정

교당에서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 규정은 설치주체, 시설 기준, 운영기준 등인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치주체는 정부 지원<sup>71)</sup>을 받는 무료·실비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할 수 있

6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10].

69)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2항.

70)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71) 정부지원은 인건비, 운영비등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며, 기본 지원액은 개소당 5,000 만원이다.

으며, 유료시설인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00m<sup>2</sup> 이상이어야 하며, 직원의 배치기준은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용정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는 7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이며, 교당에서 교회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 2) 인력문제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는 자격이 필요한 사람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과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이며, 이용정원이 1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는 추가로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교당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장은 교무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교도의 자격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재가교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교무들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었으며, 교화현장의 경우 각 교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교당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무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하며, 굳이 행정기관의 법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교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무들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원불교학과 수학과정에서 사회복지를 복수전공하는 길이 있으며, 교무가 된 이후에는 교무직을 수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간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편입하거나, 특수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자격자를 배출했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1998년 말로 폐지되었다.

## 3) 공간문제

주간보호시설의 공간으로는 연면적 100m<sup>2</sup>가 필요하며, 필요한 설비시설은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 등이다. 이렇게 필요한 공간들은 교당 공간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거나 부족한 면적만큼 개량이나 증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재정문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다. 비단 주간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재정문제일 것이다.

시설장을 교무가 겸하게 되면 교무의 인건비는 줄일 수 있으며, 자격이 필요한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인력은 재가교도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재정문제는 근근히 메꿀 수 있으리라 본다.

예컨대 10인 미만일 경우, 기본서비스 4,000원 + 특수서비스 1,500원 \* 20일(주 5일) \* 9인 = 990,000원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로 6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운영비에 충당하면 될 것이다. 10인 이상일 경우 20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000원 + 1,500원 \* 20일 \* 20인 = 2,200,000원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로 1,2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비용만으로는 재정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적자도 예상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교화비용 차원에서 교당재정으로 메꾼다면 비용은 들어가지만 비용 투자에 대한 효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거론하듯이 교화의 활성화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사회복지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또 교당에 들어오는 돈은 교화, 교육, 자선 세가지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선분야인 주간보호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5) 프로그램문제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기본서비스와 특수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서비스에는 중식제공, 간식제공, 물리치료 등이 포함되며, 특수서비스에는 목욕, 용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두 시설의 프로그램을 예시해보면, 먼저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일정표는 <표 4>와 같다.

<표 4>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프로그램 일정표

시 간	내 용
10:00	입소
10:30	건강진단, 영양간식
11:00	음악요법, 레크리에이션, 인지활동
12:00	건강체조 및 율동
12:15	중식(영양식)
12:40	비디오 시청, 회상요법
13:30	미술요법, 공예, 가사, 원예요법
14:30	영양간식
15:00	작업치료, 물리치료
16:00	퇴소

자료 : 북부노인종합복지관(1997), 내부자료; 이혜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998, p. 34

중풍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의 주간보호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은 1) 치료레크레이션, 물리(운동)치료, 작업훈련, 언어치료, 한방침, 수지침, 2) 인지훈련, 회상훈련, 집단상담, 영화감상, 3) 노래교실, 미술표현훈련, 대화나누기, 4) 건강교실, 야외수업, 당뇨, 혈압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설의 주간보호프로그램의 일정표는 <표 5>와 같다.

<표 5>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혈압검사 *건강체조 *집단 상담 *이미용봉사	*건강체조 *종이접기 *미술표현훈련	*혈압검사 *건강체조 *수지침	*건강체조 *치료레크레이션	*혈압검사 *건강체조 *한방침
오후	*혈압검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식	*물리치료 *회상치료 *대화나누기 *간식	*물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인지치료 *감각훈련 *간식	*물리치료 *영화감상 *간식

자료 : 서울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 두 시설은 각각 특수한 상태에 있는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일반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을 띠지 않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 5. 교당의 노인주간보호프로그램의 예측 효과

### 1) 효의 실천 지원

노인복지법 제3조에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여느 서구 복지국가와 다름없이 경로효친 사상이 약해져가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노인의 지위 하락과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가족 속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세태로까지 변화되었다. 가족 속에서 예전과 같은 효가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속에서 효가 실천이 안되는 이유는 자식들의 부양의식의 약화도 원인이 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핵가족 속에서 노인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고, 주거사정이 열악하며, 가장 한 사람의 수입으로 부모까지 모시기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은 불리하기만 한데 또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열악한 사정 속에서 부모들이 모셔지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노인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보호사업을 통해서 낫동안 노인을 보살펴 드리게 되면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을 덜어주게 되므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보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 2) 가족유지 지원

가정은 복의 터전<sup>72)</sup>이라고 하지만 화(禍)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부부불화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는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기도 된다. 실제로 회갑을 넘기도록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60대 부부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수발에 시달리는 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남편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기한 사례도 있

---

72) 「성가」 제81장.

으며, 또 부모수발에 지친 며느리가 부모를 학대하다가 구속되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 사례도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부모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해서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 3) 교도가정의 노인부양 지원

주간보호사업은 노인교도들에게는 노인교도를 돌봐드림으로 해서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젊은 교도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를 돌봐드림으로 해서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을 화목하게 해주고 일원가족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 4)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해결 지원

노인이 가정에서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고 특별한 취미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역전이나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낯동안 서성이고 방황하는 노인들이 많다. 집에서 가족들이 점심을 차려주지 않고 또 집에 있기가 눈치 보여서 밖에 나와서 서성이 다가 결식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 하는데 가서 한끼 때우기도 하는데, 그나마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은 그냥 무료하게 하루를 밖에서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노인들을 주간보호프로그램을 통해 보호해주게 되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5)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봉사

교당은 주간보호사업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노인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문제 해결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는 길이 되고, 지역사회를 쾌적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6) 원불교의 위상 제고

교당이 주간보호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원불교가 알려지게 되고 원불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원불교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 7) 교화의 활성화

교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이 있겠지만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원불교가 알려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화가 활성화 될 것이다.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화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화방법으로서, 주

는 교회·베푸는 교화의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교화는 아주 홀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 6. 결 론

앞으로 원불교 사회복지의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와 격리된 시설 위주에서 탈피하여, 또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복지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돋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는 교화를 실천하는 길이 되며 교화와 복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당의 사회복지시설화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많이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아동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다 덜 전문적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당에서의 실현이 용이한 사업은 주간보호사업이라는 생각에서 교당에서의 주간보호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간보호사업은 유아들을 위한 놀이방 개념으로 생각해서 노인들을 위한 놀이방 즉 탁로소라고 이해하면 된다. 교도이든 비교도이든 가정에서 잘 모셔지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교당으로 모셔서 낮동안에 보살펴 드린다면 교당은 사람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은 자연히 교도로 연결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아를 통해서 학부모와 연결되어서 교도로 이어지지만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노인 자신이 교도가 될 수 있고 2차적으로 그 노인의 가족들과 연결될 수 있다.

돈을 받지 않고 보살펴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수납하고 그것으로 유지가 안된다면 교화비용에서 충당한다면 결국은 교화 활성화로 이어져서 그 비용의 몇 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를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순수한 목적에 위배되므로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순수하게 복지를 실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히 교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은 교화와 복지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복지의 실천이 곧 교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우선 눈앞의 수지대조에만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베푸는 사업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